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728
----------	-------

발의연월일 : 2025. 11. 28.

발 의 자 : 전용기 · 김영호 · 한준호
정준호 · 문진석 · 안태준
박정현 · 박선원 · 김원이
신정훈 · 이용선 · 박 정
이연희 · 김남희 · 송옥주
한민수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에게 대신 변제하고 있으나, 변제금액은 매년 급증하여 누적되는 반면, 회수율은 20% 수준에 그쳐 보증제도의 재정 건전성과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음. 특히 악성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한 상황임.

한편, 유사한 의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등의 강한 제재가 시행되고 있음. 이에 악성 임대인에 대한 대응 수단 공백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됨.

따라서 고액·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상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7 신설).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3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7(출국금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의5에 따라 성명 등이 공개된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채무 상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즉시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공개된 성명 등이 삭제된 경우
2. 국외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질병 치

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및 그 해제의 요청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국금지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4조의5에 따라 성명 등 공개가 결정된 상습 채무불이행자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4조의7(출국금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의5에 따라 성명 등이 공개된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u> <u>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u> <u>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채무 상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즉시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u> <u>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u>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공개된 성명 등이 삭제된 경우

2. 국외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및 그 해제의 요청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